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783호 2013년 7월 10일(수)

공 고

○ 건축허가(신고)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..... 2

회 램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건축허가(신고)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

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(신고)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·공고 합니다.

2013년 7월 10일

속 초 시 장

1. 공 고 명 : 건축허가(신고)에 따른 도로지정
2. 도로위치 :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산50-2번지
3. 공고기간 : 2013. 7. 10.~ 2013. 7. 25. (15일)
4. 도로지정 조서
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m ²)		소유자	허가(신고)번호	비 고
			공부 면적	지정 면적			
노학동	산50-2	임	793	398	강혁구	2013-도시디자인과- 신축신고-23	건축주:강혁구

5. 공고방법 :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
6. 관계도서 : 속초시 도시디자인과 비치(열람가능)
7.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건축지도팀(033-639-2769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위치도 및 현황도

-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.



위치도

축척

NONE



현황도

축척

NONE